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개선방향〉

제안문(안)	위원 검토 의견 (11.23.수)	제안문 수정 수정안
<p>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감사는 스스로 내부적인 견제장치를 확보하여 지방자치를 규정한 헌법정신을 실현하는데 의미 있는 수단이므로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공정·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좌동</p>
<p>1. 인천·울산·경기·충북·경북·전남·전북의 <u>시·도</u>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장에게 현행 독립제 자체감사기구를 독립성 제고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합의제 기구인 감사위원회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p>	<p>○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도 감사위원회를 둘 필요 * 인구·예산·규모 등을 고려</p>	<p>1. 인천·울산·경기·충북·경북·전남·전북<u>과 수원·고양·용인·창원의</u>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장에게 현행 독립제 자체감사기구를 독립성 제고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합의제기구인 감사위원회로 전환<u>하고, 상근직 감사위원 1명 이</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근직 감사위원 1명 이상 의무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의제 감사위원회 찬성, 다만 제도적 영속성 보완 ○ 감사위원 구성시 상임감사 위원 1인 의무화 	<p><u>상을 의무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u></p>
<p>2. 감사원장에게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자격에 있어 온정주의와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할 자격이 있는 사람(퇴직자)을 일정 기간(2~3년) 제외하고, 자체감사기구의 장으로 임기(5년) 만료한 사람에 대해 계속해서 연임 또는 중임을 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 마련을 제안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출신 감사원 퇴직공무원, 중앙부처 퇴직 공무원도 제한 필요 	<p>2. 감사원장에게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자격에 있어 온정주의와 <u>이해충돌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역과 연고가 있는 감사원·중앙부처 공무원 또는</u> 해당 해당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할 자격이 있는 사람(퇴직자)을 일정 기간(2~3년) 제외하고, 자체감사기구의 장으로 임기(5년) 만료한 사람에 대해 계속해서 연임 또는 중임을 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 마련을 제안한다.</p>

<p>3.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회계·보건·환경·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u>외부전문가가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감사원장은 이를 자체감사활동 심사 시 심사지표에 반영해 줄 것을 제안한다.</u></p>	<p>○ 감사위원 임명시 외부전문가 일정비율 이상 포함</p>	<p>3.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회계·보건·환경·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u>외부전문가가 일정 수 이상 의무적으로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하고, 감사원장은 이를 자체감사활동 심사 시 심사지표에 반영해 줄 것을 제안한다.</u></p>
<p>4.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체감사기구 감사담당자 임용 시 감사기구의 장의 의견을 듣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인사배치를 하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p>		<p>4.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체감사기구 감사담당자 임용 시 감사기구의 장의 의견을 듣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인사배치를 하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p>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제안문(안)	위원 검토 의견 (11.23.수)	제안문 수정 수정안
		<p>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이 별도의 법률과 시스템에서 각각 운영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통합 관리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한다.</p>
<p>1. 현재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이 각기 다른 법률과 자치법규로 구성됨에 따라 동일한 예</p>		<p>좌동</p>

산비목(ex. 민간위탁사업비 등)이 다르게 관리되는 등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의 보조금 집행과 관리에 혼선을 줄 수 있으므로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에 **공통으로 적용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표준관리지침 마련**을 권고한다.

2. 보조금 지급자 단위로 보조금시스템이 관리됨에 따라 부정수급자가 모니터링 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으므로, 지방보조금 통합관리망과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공적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보조금 수급자 단위로 부정수급 위험요인을 빠짐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 시스템 연계를 통한 보조금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권고한다.

좌동

<p>3. 사업신청단계부터 사후정산까지 상시 모니터링 및 부정수급 사전 예방을 수행하고,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IT기법을 활용한 최신 모니터링기법을 적용하여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할 것을 권고한다.</p>	<p>○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최신 기술 활용 필요 * 수혜자의 편의성과 관리자 입장의 통합적 관리가 균형 있는 반영 필요</p>	<p><u>3. 사업신청단계부터 사후정산까지 보조금 수급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보조금 관리자의 통합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블록체인과 클라우드 등 최신 IT 기술을 적용하고, 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 와 같은 최신 모니터링기법을 적용하여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할 것을 권고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i>추가</i></p>	<p>○ 공공재정환수법 내용이 누락된 것이 아닌지, * 부정수급에 대해 종합적 관리하는 법령이 있는 만큼 이 부분을 포함 검토</p>	<p><u>4. 공공재정 부정수급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실태점검</u></p>

		<p><u>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공재정 부정 청구 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 할 것을 권고한다.</u></p>
<p>4. <u>보조금 수급자가 관련 법규 및 사업요건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련 교육/안내 강화와 더불어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행정비용(이행보증보험, 인건비, 외부회계감사비용)등을 보조금 비목에 포함하도록 권고한다.</u></p>		<p>5. <u>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급자가 보조금 등 각종 지원금 신청 및 수급 단계에서 부정수급을 할 경우, 행정청에서 제재처분 및 처벌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 하고</u> 더불어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행정비용(이행보증보험, 인건비, 외부회계감사비용)등을 보조금 비목에 포함하도록 권고한다.</p>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통한 학교운영 투명성 강화방안〉

제안문(안)	위원 검토 의견 (11.23.수)	제안문 수정
		수정안
<p>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게 견해를 표명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공동체의 중요한 주체인 학생이 자신과 관련된 학교 운영사항에 참여·결정하게 함으로써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p>		<p>좌동</p>
<p>1. 학교교육의 주체는 학생, 학부모, 교사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국·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등에 학생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한다.</p>		<p>좌동</p>

<p>2. 국·공립 학교 외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 간 격차 없이 학생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한다.</p>		<p>좌동</p>
<p>3. 다만,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위원이 심의 가능한 사항을 학생의 학교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것부터 도입하되, 점차적으로 이를 확대·적용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p>		<p>좌동</p>